

대학원 편입학 학사에 관한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5.10.28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대학원 편입학 학사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2장(입학 및 편입학), 제11조(편입학 및 정원의 입학)에 의거 편입학한 학생의 학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이수학기 인정 및 수업연한) ① 편입학한 학생의 이수학기는 편입학 사정시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.

② 편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에 규정한 수업연한에서 전항에 의거 인정받은 이수 학기를 제외한 학기로 한다.

제3조(등록)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.

② 수료를 위하여 각 학위과정별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, 과정수료 후에는 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점인정) ① 편입학생의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B0이상의 교과목에 한하여 소속 주임교수의 심사와 대학원장 또는 항공·경영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편입학기 2학기에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 각 대학원에서 수학한 학생이 본교의 일반대학원 및 항공·경영대학원에 편입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기 및 학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.

<개정 2015.10.28>

제5조(석·박사통합과정 편입학생의 석사학위 수여) 석·박사통합과정에 편입학한 학생이 통합과정을 포기할 경우 편입 후 3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, 학칙 제36조의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해야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6조(선수과목) 편입학생은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대학 학부에 설강된 과목의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.

제7조(전공 및 지도교수) 일반대학원 편입학생은 편입학 후 첫 학기에 전공 및 지도교수를 선정하며, 항공·경영대학원은 12학점 취득(편입학 인정학점 포함)후 전공 및 지도교수를 선정한다.

제8조(연구지도학점) 연구지도학점은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때부터 매학기 2학점씩 취득하여야 한다.

제9조(종합시험 인정) 본교 대학원 졸업 또는 제적된 후 일반대학원 또는 항공·경영대학원에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 대학원에서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 대학원장 또는 항공·경영대학원장

의 승인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28>

제10조(학위논문제출)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제8장에 의한다.

제11조(규정적용) 대학원의 학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하되,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며,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